24. 12. 16. 오후 2:31 인쇄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법 제12조, 제13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이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